

定款

制定 1978.6.7
變更許可 1981.7.24

第一章 總則

▲第1条(名称) 이法人의 名称을 社團法人 韓國成人病予防協會(以下「協会」)라 한다.

▲第2条(目的) 協会는 各種 成人病의 予防對策을 강구하고 診療技術을 개발보급하여 对國民指導 계몽을 実施하므로서 国民保健向上과 福祉社會具現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条(事業) 協会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号의 事業을 한다.

1.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技術開発 및 보급

2.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도계몽

3. 成人病에 관한 研究調査 및 기술의評估

4. 成人病에 관한 藥品의 연구개발

5. 成人病 진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운영

6. 成人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대국民弘報

7. 其他 목적 달성을 위한 附帶事業

▲第4条(事務所) 協会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5条(支部) 協会는 서울특별시, 釜山市 및 각 시도에 각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海外支部를 둘 수 있다.

▲第6条(支部設置와 運營) 支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定한다.

第二章 會員 및 會費

▲第7条(会員의構成) ①協会는 아래会員으로構成한다.

1. 正会員

2. 特別会員

3. 準会員

②会員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正会員은 協会의 목적과 事業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成人病 関係学者 및 전문가 또는 本協会 발전에 功이 있는者로서 理事會의 동의를 받은者

2. 特別会員은 協会의 목적과 事業에 賛同하고 협회사업에 자진 참여하는 企業體 또는 団體의 대표자로서 理事會의 동의를 받은者

3. 準会員은 協会의 목적과 事業에 賛同하고 협회사업에 자진 참여하는 成人病을 가진者로서 理事會의 同意를 받은者

▲第8条(会員의 権利,義務) ①正会員은 總會의 구성원인 代議員이 될 수 있다

②特別会員은 대표자 1人에 한하여 總會의 構成원인 代議員이 될 수 있으며 協会의 事業에서 얻은 成人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調査研究나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③準会員은 協会事業에서 얻은 成人病 예방, 진료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결과 또는 施設을 활용할 수 있다.

④会員은 회비납부義務를 갖는다.

▲第9条(会費 및 入会) ①会費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金額은 理事會의 議決로 定하며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入会費

2. 正会員会費

3. 特別会員会費

4. 準会員会費

②協会에 입회고자 하는 者는 協会 소정양식의 入会원서를 提出하되 入会金과 会費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納付한 金額은 반환치 않는다.

▲第10条(会員의 자격상실) ①会員은 다음 각号의 경우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資格을 상실한다.

1. 協会의 명예를 손상시킨 때

2. 協会의 財產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

第三章 任員과 代議員

▲第11条(任員) ①協会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약간명 (保健社會部 医政局長은 당연직 副會長이 된다)

3. 理事 7人 이상 20人 (會長, 副會長 포함) 以内

4. 監事 2人

②任員은 總會에서 선출하고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第12条(会長의 権限) 會長은 協会를 代表하며 会務를 統理한다.

▲第13条(副會長의 権限)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고 會長有故時는 年長順으로 会長의 権限을 代行한다.

▲第14条(監事) 監事는 民法上 67條의 職務를 行한다.

▲第15条(任員의 임기)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選된 任期는 前任者の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16条(任員의 처우) 任員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법위반에서 諸手当 및 旅費 등을 支給할 수 있다.

▲第17条(代議員의 構成) ①代議員은 당연직 代議員과 一般代議員 및 支部대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第18条(代議員의 任期)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選된 代의원의 任期는 전임자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19条(代議員의 権限) 代의원은 総회에 참석하여 정관 제26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第20条(専門委員) ①協会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이사회동의를 받아 会長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第21条(名譽會長, 顧問) 協会에 名譽會長 1人과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협회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総회의 議결로 추대한다.

2. 고문은 協会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成人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議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재판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第四章 會議 및 機構

▲第22条(會議) 協会는 다음 각호의 会议를 둔다.

1. 總會

2. 理事會

3. 專門委員會

▲第23条(總會) ①總會는 代議員으로 구성되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12月 中에 會長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監事의 요구가 있을 때는 會長이 임시회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의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24条(會議成立과 議決) ①協会의 각 회의는 본정관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議事는 참석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각급회의에 있어 필요에 따라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第25条(議長) ①會長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議長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第26条(總會決事項) ①總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입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4. 재산득실 및 변경에 관한 승인사항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6.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總會의 議事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議長 및 議長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5人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27条(理事会)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年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월요하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監事의 요구가 있을 때는 會長이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協会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실행이사 약간인을 두어야 한다.

④實行理事会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여 協会의 목적사항을 수행하는데 會長을 보좌한다.

⑤實行理事会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次期理事会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監事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28条(理事會決事項)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總會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전문위원 위촉 등의 회원입회동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변경 및 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무부담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7. 결원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8. 재규정제정 및 改廃에 관한 사항

9.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규정

11. 지부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14. 사무총장인준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第29条(専門委員會) ①専門委員會는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협회의 學術, 技術, 調査研究, 開発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第30条(事務處) ①總會 및理事会에서 결의된 事項과 협회 通常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事務長과 職員을 둔다.

②事務처의 各部署의 업무분장과 職制人事管理, 服務, 보수에 関한 사항은 別途規程으로定한다.

▲第31条(職員) ①事務長은 회장이任免되며理事会의 인준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職員은 사무총장 提請에 依하여 회장이任免한다.

▲第32条(事務長의 任務) 사무총장은 회장의命을 받아 다음 각호의 任務를遂行한다.

1. 總會 및 이사회에서 議決된 사항의 处理

2. 직원의 指揮監督

3. 기타協会 通常業務의 处理

第五章 事務處 및 職員

▲第33条(財産) ①協会의 재산은 基本財産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基本財産은 협회가 取得하고 있는 不動產 및 主要動產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의 收入金으로 하여 定款第3条의 사업수행 및 運營에 필요한 用途에만 使用하여야 한다.

1. 会費

2. 補助金

3. 費助金

4. 事業收入金

④協会의 재산 중 現金은 金融機關에 예치하여야 한다.

▲第34条(基本財産의 处理) 기본재산을 讓渡, 担保, 貸与, 代替, 基他 재산상의 負担을 주는 行為를 하여 할 때에는理事会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35条(会計年度) 協会의 회계년도는 政府会計年度에 準한다.

▲第36条(予算, 決算) ①협회의 事業계획 및 予算은 매회계년도 開始前에 이사회 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事業실적 및 決算은 매회계년도 폐쇄후 2個月以内에 이사회 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7条(会計事務) 이 定款에 규정되지 않는 会計事務에 關하여는 予算会計法에 準한다.

▲第38条(施行規定) 이 定款에 규정이 없는 事項으로서 協会運營에 필요한 사항은理事会에서 별도로 定한다.

▲第39条(定款改正) 이 定款의 变경은 總會在籍代議員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議決하고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0条(解散) 협회를 解散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議決을 거쳐 總會在籍代議員 4分의 3以上 贊成으로 議決하고 主務部長官의 聲인을 받아야 한다.

▲第41条(財產處理) 協会解散時の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을 거쳐 主務部長官의 聲인을 받아 협회와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體에 기부한다.

第七章 補則

①(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日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